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 공공기관은 홀수일에는 홀수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
- 민간차량도 차량번호 끝번호에 따라 5부제 해당요일에는 공영주차장 출입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3월 25일부터 강화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있었던 지난 3월 17일에도 수도권과 충남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하여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지침을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포(4.2.)하여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줄 것과 불요불급한 출장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면)이 해당된다.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1, 6번 차량,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 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요일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물론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되며 공공기관장은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외시킬 수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주차장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지침을 배포할(4.2.) 계획이다.

※ 경차, 하이브리드차량은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

아울러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하며, 민간 부문 의무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이 엄중하여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라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 붙임 1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관련 Q&A.
 2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지침
 3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 끝.

| | | | | |
|-------|----------------------|-----|-----|--------------------|
| 담당 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책임자 | 과 장 | 양광석 (044-203-3984) |
| | | 담당자 | 사무관 | 한주영 (044-203-3981) |



| 질의·답변 | |
|---|--|
| <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관련 > | |
| ① 공공기관 2부제는 운행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일제의 경우 해당되는 요일에 운행이 제한되었으나, 2부제의 경우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고, 짝수일에는 짝수차량이 운행 가능하도록 운영 ■ 이는 기존에 시행되어왔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승용차 2부제와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임 ■ 시행 초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임 |
| ② 공공기관 2부제는 석유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기존 공공부문 5부제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A는 5부제 시행시 승용차 전체 연료 소비의 1~5%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 ■ 공공기관 승용차 약 130만대로에 5부제를 시행하면 월 0.69~3.5만배럴 절감 효과 ■ 2부제 시행 시 5부제 비해 운휴일이 2.5배 증가하므로 월 1.7~8.7만 배럴 절감 가능 ■ 1배럴(159리터)이 승용차 연료통(40~75리터) 3대를 채울 수 있으므로 월 약 5.1만~26.1만대 승용차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임 |
| ② 공공기관 민원인이나, 대학교 학생들 차량도 2부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2부제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원인 등의 출입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됨 ■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도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해서 출입차량에 대하여 5부제 적용토록 하였음 ■ 국립대학병원 등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문객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5부제를 포함한 출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음 |
| ③ 기존 공공부문 5부제(요일제)와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였으나 2부제를 시행하면서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임, * (1회) 구두경고·계도 → (2회) 기관장 보고·주차장 출입제한 등 → (3회) 징계 ■ 또한 청사 주차장 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불법주차를 통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일 1회 청사 인근을 단속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임 ■ 그 외, 제한대상 차량 등은 기존 공공부문 5부제(요일제)와 동일함 |
| ④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지나치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가 아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의 경우 2부제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 공영주차장 5부제 관련 >

① 전국 모든 공영주차장을 일괄 시행하는지?

- 공공기관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가 가능하여 지역 여건에 맞추어 각 공공기관에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임
- * 예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

② 공영주차장 5부제는 모든 차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출입제한 대상임
- 다만, 전기차·수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그 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자동차 등은 제외임
- 또한, 기본적으로 끝번호 요일제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한되는 요일에는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입차를 제한함

③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 공영주차장 5부제는 IEA 기준 약 100만대에 5일제를 적용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월 0.5~2.7만 배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IEA는 승용차 5부제 시행시 승용차 연료 사용량의 1~5% 절감될 것으로 예상,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 면수가 100만면이므로 차량 100만 대에 5부제 효과를 적용한 수치
- 다만, 해당 수치는 전체 공영주차장이 시행되었을 때를 가정한 수치로 제외 주차장 및 제외 차량, 공영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절감량은 이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

④ 공영주차장만 대상으로 하는지? 민간에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에 적용될 계획이며 민영주차장은 자율에 맡길 예정임

<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관련 >

① 민간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의무 실시 계획은 있는지?

- 아울러 민간 5부제는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임
- 민간 부문 5부제 시행여부는 예단할 수 없음

② 민간 5부제(요일제) 의무화 할 경우 제외대상 차량은 있는지?

- 민간 5부제(요일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붙임2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지침

- (목적) 원유 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감축 및 에너지절약 선도(3.25.5부제 → 4.8.2부제)

* IEA는 5부제 시행 시 승용차 사용량의 1~5% 절감 예상 → 공공기관 2부제의 경우 월 1.7 ~ 8.7만 배럴

- (기간) 2026.4.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205) 및 공공기관(328), 지방자치단체(243) 및 지방공사·공단(166), 시도교육청(17)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1만개) 등 약 1.1만개

○ 국회, 법원 등은 공공기관에 준해 시행 협조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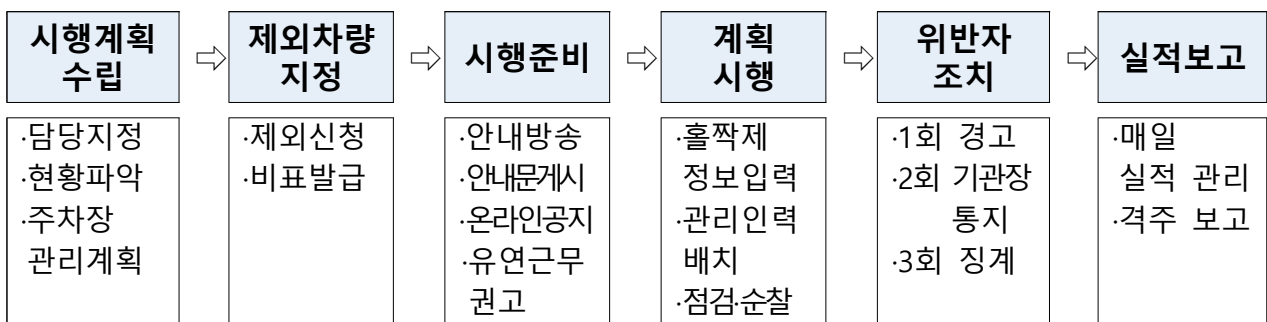
- (대상차량)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차량 제외

* 민원인의 경우 공영주차장 5부제 준하여 출입관리

- (시행방법)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시행절차) 공공기관장이 주관하여 시행



- (실태점검) 에너지공단을 통해 불시점검 실시 → 미흡기관은 시정요구, 언론공표 검토 등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

(시행 2026.4.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개요

1-1. 목적

-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2026.4.2.)에 따라 既시행중인 「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2026.3.24.)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1-2. 시행기간

- 2026.4.8.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1-3. 대상 공공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치과병원

1-4. 대상 차량

-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공공기관이 사용하는(임대차량도 포함) 공용 승용자동차

-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 실시(정부청사 주차장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해당, 다만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병원·치과병원의 부설주차장은 제외)

1-5. 제외대상 차량

-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다음 각 호의 차량

-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나. 전기차, 수소차
- 다.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는 등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등 포함
- 라.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마.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1-6. 운행제한 방법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 운행차량 |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
| 홀수날짜 | 짝수날짜 | |
|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 |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도 적용 제외

- 운행이 허용되는 날에도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아닌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에는 주차 불가

제2장 공공기관장의 임무

2-1.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각 기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별표1]

가. 해당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

나. 해당청사의 주차장 현황,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량현황, 제외차량 현황 등
다. 시행 안내계획 및 출입구 관리계획, 주차장별 관리계획 등

- (시행계획 제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 관리감독 기관은 소속기관 등이 수립한 계획을 취합하여 등록(~'26.4.7.)

* <https://min24.energy.or.kr/pe>

2-2. 제외차량 지정

- 임직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외사유 판단 및 제외차량 파악[별표2]
- 제외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제외사유 등을 기재하고 기관장 직인을 찍어 비표 발급[별표3]
 - 제외차량 정보를 출입차단기 등에 입력
 -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시 발급했던 비표도 인정

2-3. 시행 안내

- 일일 1회 이상 2부제 준수 안내방송 실시 및 주차장 입구, 주요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승용차 2부제 시행 포스터 게시, 안내영상 방영
 - 일회용 홍보물(플라스틱, 현수막 등) 제작은 가급적 최소화
- 기관 내 업무망,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한 승용차 2부제 시행 공지,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 안내

2-4. 계획의 시행

-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차단기에 요일제 정보 입력 및 관리
-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출입관리 인력 배치, 출근시간 (7:30~9:30)을 중심으로 통제
- 출입관리 인력 배치가 어려울 경우 점검인력을 편성하여 1일 2회(오전 /오후) 순찰 실시
- 청사 주차장 외 인근 주차시설, 도로변 등에 주차하는 의무 회피 행위 일일 1회 단속
- 기관 소재 지자체장에게 기관 주변 불법주차 단속 요청

2-5. 이행지원

-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출퇴근 편의 개선
- 원거리 관사 등의 직원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등 운영 검토
- 사내 게시판을 통한 카풀(Carpool) 등 차량공유 권장
-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

2-6.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최초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경고
 -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경고장 부착 및 위반사실을 사내메일, 메신저,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통지
- 2회 위반 시 일정기간 주차장(예시: 1주일) 출입통제 및 기관장 통보

- 상습위반자(3회 이상) 대상 징계 조치
- 차량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거나 운행제한일에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2회 위반 시 징계조치
- 위반사항 통지, 2주간 조치결과 등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

2-7.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 다음 각 호의 관리감독 기관이 관리감독 대상기관에게 시행지침 배포, 시행계획 수립, 이행실적 보고 등 관리감독을 담당

| 관리감독 기관 | 관리감독 대상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모든 공공기관 |
| 중앙행정기관 |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
| 광역지방자치단체 | 소속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소속기관, 산하 지방공사 또는 공단 |
| 시도교육청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 국회, 법원 등 非행정기관에도 공공기관 기준의 협조요청

2-8. 실적제출

- 담당부서는 소속기관 등 관리감독 대상기관 실적까지 취합하여 관리
- 매달 2회(첫번째, 세번째 수요일) 출입현황과 위반사항 등 2주 간 주요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별표 4]

* <https://min24.energy.or.kr/pe>

제3장 실태점검

3-1. 실태점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실태 불시점검 실시

- 가. 승용차 2부제 시행계획 수립 여부
- 나. 승용차 2부제 시행을 위한 자료 관리 현황(점검표 작성 현황 등)
- 다. 제외차량 관리 및 비표관리 현황
- 라. 출입차단기, 출입관리자 배치, 단속인력 편성 등 장비 및 인력운영 현황
- 마. 출입구/엘리베이터 등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실시 등 시행안내 실적
- 바. 단속실적 및 위반자 관리현황

- 이행실태가 미흡한 기관은 조치명령, 조치결과 관리기관 보고, 언론 공표 검토

[별표 1] 시행계획서 양식

| (기관명) 승용차 2부제 시행계획 | | | |
|---------------------------|---|------------------------------------|----------|
| ①기관장 | ○○○(성함) | | |
| ②주 소 | 기관 소재지 주소 | | |
| ③담당자 | ○○○(부서명), ○○○(성함), 010-0000-0000(핸드폰 연락처) | | |
| ④임직원 수 | 000명(직원수) | ⑤대상차량수 | 000대(대수) |
| ⑥제외차량 | 000대(대수) | 취약계층 | 000대(대수) |
| | | 대중교통 미흡 | 000대(대수) |
| | | 환경친화 | 000대(대수) |
| | | 기타 | 000대(대수) |
| ⑦주차장 수 | 0개소 | 주차면 수 | 00면 |
| ⑧출입차단기 5부제 입력여부 | | 입력/미입력 여부 | |
| ⑨출입관리자 배치계획 | | 관리자 주간/야간, 순환근무 등 | |
| ⑩청사 인근 도로 점검계획 | | 주1회 등 | |
| ⑪안내방송 실시계획 | | 1일 1회 등 | |
| ⑫안내포스터 게시 | | 게시여부 및 위치 | |
| ⑬유연근무/재택근무 시행계획 | | 시행여부 및 내역 | |
| ⑭위반자 조치계획 | | 1회 경고 2회 기관장 보고 3회 이상 자체징계 등 | |

「승용차 2부제」 적용제외 신청서

○ 소 속 :

○ 성 명 :

○ 차량번호 :

○ 적용제외 사유

- 임산부 유아동승 장거리 출·퇴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타()

20 . . .

신청인 : (인)

00기관장 귀하

※ 적용제외 사유별 붙임서류(사본)

1. 임산부(산모수첩)
2. 유아동승(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증명서)
3. 장거리 출·퇴근(장거리 증빙서류 Ex.주민등록초본 등)
4. 기타 (기타사유 증빙 서류)

※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경우 만료일전 연장 신청시 제출 불필요

승용차 2부제 적용제외 대상차량

- 적용제외기간 : 2026.4.00 ~ 2026.0.00
-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 차량번호 :

2026.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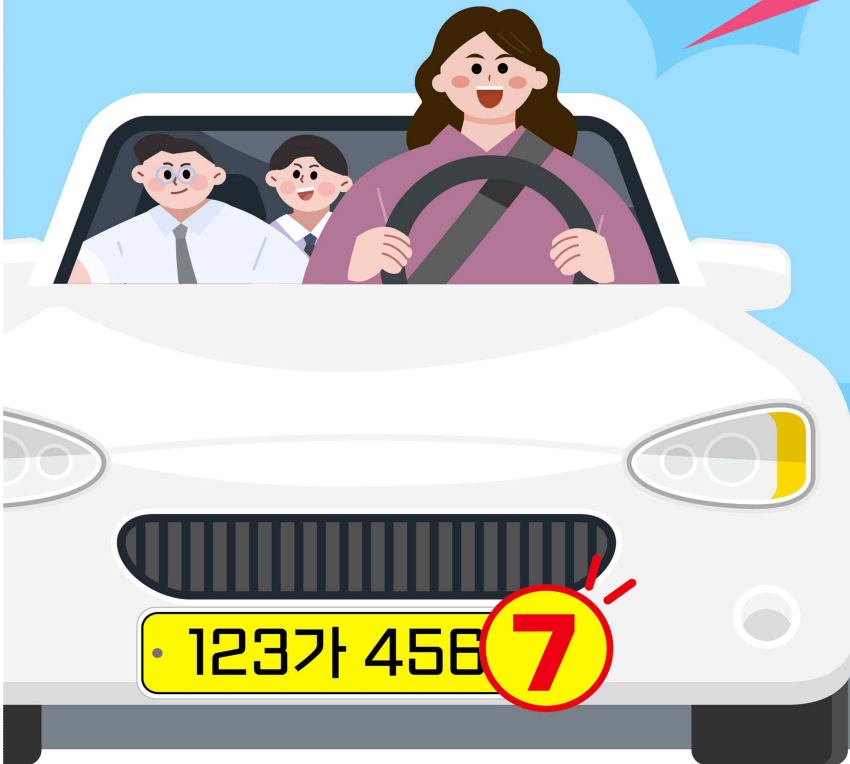
○○○기관장 (인)

[별표 4] 이행결과보고(양식)

| [기관명] '00.00.[1~2주/3~4주] 승용차 2부제 이행결과 보고 | | | | |
|---|---|--------------------------------|----------------|---------------------------|
| ①기관장 | ○○○(성함) | | | |
| ②주소 | 기관 소재지 주소 | | | |
| ③담당자 | ○○○(부서명), ○○○(성함), 010-0000-0000(핸드폰 연락처) | | | |
| ④임직원 수 | 000명(직원수) | ⑤대상차량수 (‘00.00.00. 기준) | 000대(대수) | |
| ⑥제외차량 (‘00.00.00. 기준) | 000대(대수) | 취약계층 | 000대(대수) | |
| | | 대중교통 미흡 | 000대(대수) | |
| | | 환경친화 | 000대(대수) | |
| | | 기타 | 000대(대수) | |
| ⑦주차장 수 | 0개소 | 주차면 수 | 00면 | |
| ⑧관리현황 | 기관장이 인정하는 적용제외사유 | 제외사유 000대 | | |
| | 출입차단기 5부제 정보 입력 여부 | 0/X | 출입관리자 배치 현황 | 총 0명 배치위치 |
| | 청사 인근 점검 현황 | 점검지역(인근 노상 주차장 등) 점검주기 월 0회 | | |
| | 안내방송 실시 현황 | 일 0회 | 안내포스터 게시 내역 | 총 0부 배치위치 |
| | 유연근무 시행계획 | (예시)유휴일 1시간 유연근무 권고 | | |
| ⑨위반자 조치결과 | 적발 건수 | 총 0회 | 조치 현황 | 경고 0회 출입금지 0회 징계 0회 |
| ⑩적발세부내역 | 적발일시 | 적발내용 | 위반자소속 | 조치결과 |
| | ‘00.00.00. | 차량 미등록 청사 내 적발 청사 외 적발 등 | (하부기관명) | 경고/제재/징계 등 |
| | | | | |
| | | | | |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2부제
지켜주세요!

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는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123가 4567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1, 3, 5, 7, 9)
홀수일 운행

123가 4568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2, 4, 6, 8, 0)
짝수일 운행

붙임3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안)

- (목적) 원유 안보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차량출입을 일부 제한,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자발적 5부제 참여 독려

* IEA는 5부제 시행 시 승용차 사용량 1~5% 절감 예상 → 공영주차장 100만면 5부제의 경우 월 0.5 ~ 2.7만 배럴

- (기간) 2026.4.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대상주차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13,088개) 및 노외주차장(16,181개) 등 총 29,269개소(약 105만면)

*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주차장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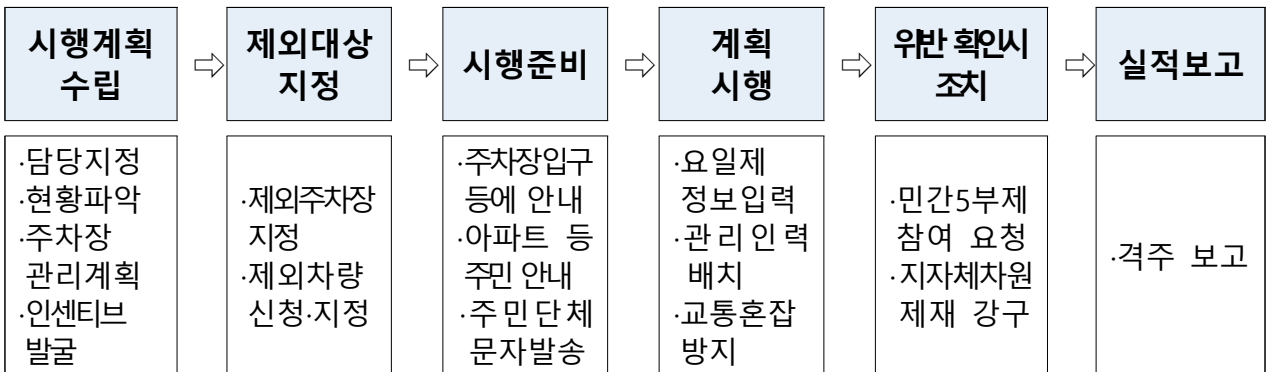
- (대상차량)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등 제외

- (시행방법)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

| 출입제한 차량 | | | |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
| 월 | 화 | 수 | 목 | 금 | |
| 1, 6 | 2, 7 | 3, 8 | 4, 9 | 5, 0 | |

- (시행절차) 기후부가 총괄하고 국토부 협조, 각 공공기관이 시행



- (실태점검) 기후부, 국토부 현장점검 실시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

(2026.4.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개요

1-1. 목적

-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2026.4.2.)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차량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1-2. 시행기간

- 2026.4.8.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1-3. 대상 공공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치과병원

1-4. 대상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중 공공기관장이 지정
- 각 공공기관장은 ‘포털 사이트(네이버 지도 등)’에 게재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정보에 5부제 시행 사항을 추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

1-5. 제외대상 공영주차장

- 공공기관장은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제외 주차장 지정
 - 가.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 나.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 다.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 라. 교통량이 많지 않아 인력 배치, 관리시설 설치 등에 효율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 마.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주차장

1-6. 시행시간

- 유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운영시간에 한정

1-7. 출입제한 대상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1-8. 제외대상 차량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출입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
 -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나. 전기차, 수소차
 -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1-9. 출입제한 방법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을 지정하며, 해당요일에는 해당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 차량은 공영주차장 출입제한

| 출입제한 차량 | | | |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
| 월 | 화 | 수 | 목 | 금 | |
| 1, 6 | 2, 7 | 3, 8 | 4, 9 | 5, 0 | |

제2장 공공기관장의 임무

2-1.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 각 공공기관 별 여건에 맞추어 수립
-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별표 1]

가. 해당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
나. 5부제 대상 공영주차장 현황표[별표2]
다. 5부제 시행 주차장별 관리계획

-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검토 결과 모든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5부제 시행 제외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시행계획서에 해당 내용 작성하여 제출
- 관리감독 기관은 자체 수립한 시행계획과 소속, 산하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취합하여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

* <https://min24.energy.or.kr/pe>

2-2. 제외차량 관리

- 제외차량을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에 전산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경우 입력하여 관리
- 그 외 각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여건에 맞는 출입 제외차량의 원활한 출입 방식을 강구
- 정기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의 경우, '26.4.8일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정기권 보유 차량은 정기권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일자 출입 제한 제외, '26.4.2일 이후 정기권 신규 발급·갱신 시 5부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해당 일자 출입 제한에 동의를 받은 후 발급

- 주민이 생계 등을 이유로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아 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별표3]
- 제외를 결정한 경우 제외사유 등을 기재하고 기관장 직인을 찍어 비표 교부[별표4]

2-3. 시행 안내

-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문 비치
- 청사 주요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 게시
-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영주차장 출입제한 온라인 공지 실시
-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을 위해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시행 홍보

가. 복합커뮤니티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 부착
 나. 관내 공동주택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다. 안내방송 요청, 필요 시 지역 주민에게 안내 문자 발송 등

2-4. 계획의 시행

-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차단기에 요일제 정보 입력 및 관리
-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출입관리 인력을 통해 관리
- 시행 초기 입차 제한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시행사실 안내 및 조치방안 강구

2-5. 인센티브 부여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5부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2-6. 출입제한 차량의 출입확인 시 조치

- 출입제한 차량의 출입이 확인될 경우 민간 5부제 안내 및 협조요청
- 반복 위반 차량의 경우 각 공공기관 차원의 제재 방안 강구

2-7.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 다음 각 호의 관리감독 기관이 관리감독 대상기관에게 시행지침 배포, 시행계획 수립, 이행실적 보고 등 관리감독을 담당

| 관리감독 기관 | 관리감독 대상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모든 공공기관 |
| 중앙행정기관 |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
| 광역지방자치단체 | 소속기관, 산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소속기관, 산하 지방공사 또는 공단 |
| 시도교육청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2-8. 실적 제출

- 각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이행 실적 관리[별표 5]

- 가. 관내 5부제 시행 대상 공영주차장 및 제외대상 공영주차장 현황
- 나. 공영주차장 현황표 관리
- 마. 출입구/엘리베이터 등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실시 등 시행안내 실적
- 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 각 지자체는 매월 2회(1주, 3주 수요일) 이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로 제출, 제출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 각 지자체 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

* <https://min24.energy.or.kr/pe>

- 시행계획 제출 시 운영 중인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모든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5부제 시행 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제출 불필요

제3장 실태점검

3-1. 실태점검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영주차장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 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 수립 여부
- 나. 공영주차장 현황표 관리
- 다. 그 외 공영주차장 5부제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 지자체 외 공영주차장의 경우 에너지공단이 점검

[별표 1] 시행계획서 양식

| (기관명)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계획 | | | |
|-----------------------------|---|-------------|-----------|
| ①기관장 | ○○○(성함) | | |
| ②담당자 | ○○○(부서명), ○○○(성함), 010-0000-0000(핸드폰 연락처) | | |
| ③공영주차장 수 | 00개소(00면) | ④시행 공영주차장 수 | 00개소(00면) |
| ⑤제외주차장 수 | 00개소(000면) | 민생영향 | 00개소(00면) |
| | | 이동불편 | 00개소(00면) |
| | | 효율 저하 | 00개소(00면) |
| | | 기타 | 00개소(00면) |

[별표 2] 공영주차장 현황표('00.0월 기준, 기관명)

| 연번 | 주차장 이름 | 주소 | 주차면수 | 형태 | 출입 차단기 | 출입 관리자 | 요금 | 시행 여부 | 제외 사유 |
|----|--------|----|------|-----------|--------|--------|-----------|-------|-------|
| | | | | 노상 /노외 | | | 유료 /무료 | O/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출입차단기는 있는 경우 차단방식 ①번호판 인식, ②사전등록, ③주차권, ④기타) 등으로 표시
- 2) 출입관리자는 있는 경우 근무시간 등 표시
- 3) 요금은 유료 또는 무료로 표시

[별표 3] 제외차량 신청서 양식(예시)

| 공영주차장 요일제 제외차량 신청서 | | | |
|--------------------|---|-----|------------|
| 신청인 | 이름 | 주소 | 연락처 |
| | | | |
| 차량정보 | 차량번호 | 소유주 | 차종(모델, 인승) |
| | | | |
| 신청사유 (체크)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동승포함),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임산부, <input type="checkbox"/>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input type="checkbox"/> 전기차, <input type="checkbox"/> 수소차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보도, <input type="checkbox"/> 외교, <input type="checkbox"/> 경호, <input type="checkbox"/> 경찰, <input type="checkbox"/> 소방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input type="checkbox"/> 기타(사유 기술) | | |
| 증빙서류 | 제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 별첨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 기관장 귀하

[별표 4] 제외차량 비표(예시)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제외 대상차량

- 적용제외기간 : 2026.4.00 ~ 2026.0.00
-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 차량번호 :

2026.4.00

○○○기관장 (인)

[별표 5]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실적

| [기관명] '00.00.(1~2주/3~4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실적 | | | |
|--|---|-------------|-----------|
| ①기관장 | ○○○(성함) | | |
| ②담당자 | ○○○(부서명), ○○○(성함), 010-0000-0000(핸드폰 연락처) | | |
| ③공영주차장 수 | 00개소(00면) | ④시행 공영주차장 수 | 00개소(00면) |
| ⑤제외주차장 수 | 00개소(000면) | 민생영향 | 00개소(00면) |
| | | 이동불편 | 00개소(00면) |
| | | 효율 저하 | 00개소(00면) |
| | | 기타 | 00개소(00면) |
| ⑥제외대상 차량 수 | 000대 | 취약계층(장애인 등) | 00대 |
| | | 전기·수소 | 00대 |
| | | 특수목적 | 00대 |
| | | 기타 | 00대 |
| ⑦관리현황 |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실시 등 시행안내 실적 | | |
| | 인센티브 제공방안 | | |
| ⑧주차장별 관리 현황 | | | |
| 주차장 명 | 출입차단기 유무 관리자 배치 여부 등 | | |
| | | | |
| | | | |
| | | | |